

#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관

제정	2002. 6. 29.	개정	2018. 9. 3.	개정	2026. 3. 27.
개정	2005. 3. 4.	개정	2019. 1. 28.		
개정	2008. 10. 15.	개정	2019. 8. 16.		
개정	2009. 12. 24.	개정	2019. 12. 23.		
개정	2010. 3. 22.	개정	2021. 3. 23.		
개정	2010. 10. 6.	개정	2021. 7. 23.		
개정	2012. 6. 20.	개정	2023. 1. 16.		
개정	2014. 12. 24.	개정	2024. 2. 8.		
개정	2015. 12. 30.	개정	2024. 4. 5.		
개정	2018. 1. 16.	개정	2024. 8. 27.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5.3.4.>

**제2조(목적)** 진흥원은 부산지역의 정보통신(IT), 문화콘텐츠(CT) 등 정보통신 및 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관련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역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4.>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①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연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개정 2005.3.4.>
3.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시설·장비의 관리 운영 <개정 2005.3.4.>
4.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사업 <개정 2005.3.4.>
5.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개정 2005.3.4.>

6.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개정 2005.3.4.>
7. 정부·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 <개정 2005.3.4.>
8.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사업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10인이상 15인이내(이사장, 원장 및 노동이사 각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01.16.>
  4. 감사 2인
- ②원장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원장은 다른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03.23.>

1. 미성년자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21.03.23.>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21.03.23.>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1.03.23.>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2.30.><개정 2023.01.16.>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21.03.23.><개정 2023.01.16.>

6. 삭제 <2021.03.23.>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01.16.>

**제8조(임원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10.10.6.><개정 2024.08.27.>

②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그 외 임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임면하며,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단,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0.> <개정 2019.1.28.><개정 2019.12.23.>

③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선임직 이사 중 노동이사 후보자는 진흥원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선거 등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8.><개정 2023.01.16.>

④당연직 이사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삭제> <개정 2010.10.6.>

2. 부산지방우정청장

3.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8.1.16.>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관업무 담당 본부장 <개정 2005.3.4.> <개정 2009.12.24.> <개정 2018.1.16.> <개정 2024.4.5.> <개정 2024.08.27.>

5. 부산광역시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05.3.4.> <개정 2008.10.15.> <개정 2010.10.6.> <개정 2012.6.20.> <개정 2014.12.24.> <개정 2015.12.30.> <개정 2018.9.3.> <개정 2021.07.23.> <개정 2024.08.27.>

⑤ 감사 2인중 1인은 부산광역시 소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선임직 1인은 비상근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3.4.> <개정 2008.10.15.> <개정 2014.12.24.> <개정 2018.9.3.> <개정 2019.1.28.> <개정 2019.12.23.> <개정 2021.03.23.> <개정 2021.7.23.>×<개정 2023.01.16.> <개정 2024.08.27.>

**제9조(원장과의 계약)** ①부산광역시장과 원장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원장의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정도는 시장이 매년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한다. <개정 2015.12.30.>

③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④삭제 <2021.03.23.>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개정 2019.1.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개정 2019.1.28.>

③이사장과 당연직 이사·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 한다. <신설 2019.1.28.>

④선임직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8.>

⑤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5.3.4.> <개정 2019.1.28.> <개정 2019.8.16.> <개정 2021.03.23.>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임기도 종료되며,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16.>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산광역시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 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3.4.> <개정 2008.10.15.> <개정 2010.10.6.> <개정 2012.6.20.> <개정 2014.12.24.> <개정 2015.12.30.> <개정 2018.9.3.> <개정 2021.7.23.> <개정 2024.08.27.>

③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5.3.4.>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5.3.4.>

⑤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5.3.4.>

1. 진흥원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진흥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개정 2015.12.30.>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임원의 해임 및 자격정지)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신체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케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3장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에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한다.

**제1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선임직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16.>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5.3.4.>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 1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의안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경과하여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장 또는 다른 이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제16조(의결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의결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자신과 진흥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진흥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등 기타 제척사유 발생시 <개정 2005.3.4.>

**제18조(의사록)**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9조(재산)** ①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진흥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이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3. 출연금 및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5. 매 사업년도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금
- ③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 ①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진흥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변경·매각·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0.15.> <개정 2015.12.30.> <2018.1.16.>

③진흥원의 재산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하나,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21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재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원칙 등)** ①진흥원의 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12.30.>

②진흥원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③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2024.02.08.>

**제23조(사업계획과 예산)** ①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4.><개정 2015.12.30.>

②진흥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사업실적 및 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은 완료하고 지체 없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4.4.5.>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의 각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3.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 이월

**제26조(임원보수의 제한)** 진흥원의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은 할 수 있다.

## 제5장 조 직

제27조(직제 및 정원) ①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직원의 임면 등) ①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진흥원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기관설치 및 출자) 진흥원은 제5조에 의한 수익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법인 등에 출자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진흥원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2조(해산) ①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진흥원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3조(시행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2002. 6.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법인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년도) 진흥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경비는 출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 설립당시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며 원장의 직무는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부산광역시 경제진흥실장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4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 과 같다. <개정 2019.1.28.>

### 부 칙(2005. 3.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 10.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 개정조항은 정관시행 후 선임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0. 10.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6.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재의 기본재산)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 와 같다.

**부 칙**(2019. 8.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8.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3.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구 분	명칭 / 소재지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부동산 (토지·건물)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75-8번지	대지273.96㎡ 건물1,041.37㎡	711,000,000	부산시 출연 (97.10월 구입가격)
건물전세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55-1,45 21센츄리빌딩 (7-10층)	7 ~ 10층 2,151.38평	2,151,380,000	부산시 출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내 센텀벤처타운	센텀 벤처타운 DMZ13-4/5B 1,207.85평	2,415,720,000	
기계 장비	부산S/W지원 센터	2,186점	3,211,321,307	부산시출연 (진존장부가액)
	부산멀티 미디어센터	193점	1,036,987,900	부산시 출연 (장부가액)
	부산정보통신 연구원	2,044점	1,130,764,095	부산시 출연 (장부가액)
	IT벤처센터	986점	1,391,933,000	부산시 출연 (장부가액)
계			12,049,106,302	

##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단위 : 원)

재 산 명	수 량	금 액	비 고
건물전세권	1건	2,151,380,000	대연
현금성 기본재산	1건	2,473,770,000	센텀
합 계		4,625,150,000	

###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단위 : 원)

재 산 명	소재지 및 수량	금 액	비 고
건물 전세권	부산시 남구 대연동 21센츄리빌딩 (8층) 2,370.66㎡	2,151,380,000	
현금성 기본재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내 센텀벤처타운(1-3층) 3,992.89㎡	2,473,770,000	